

안전안산 안심안산 U-CITY 2단계 구축 민자사업(BTL) 추진동의(안)

의안 번호	2236
----------	------

제출년월일 : 2012. 2. 22.
제출자 : 안산시장

□ 제안이유

- 최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 골목길 등에 CCTV시스템을 구축하여 어린이와 부녀자 등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방범, 재난방지, 쓰레기투기 방지등 11개 분야의 통합관제등을 실시함으로써 급격한 사회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도시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서 궁극적으로 도시이미지와 경쟁력 제고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사업 타당성 검토(심의)를 거치고 안산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유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라 민간투자 대상사업지정고시 이전에 의무부담 행위로 안산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 주요골자

- 가. 청소년 등 하굣길 주변 및 통학로와 어린이 대상 납치 및 성폭력 사건등 반인륜적인 범죄 예방등 11개 분야의 통합관제서비스 제공으로 유관기관 및 시민이 요구하는 지역에 CCTV 395대를 비롯 보안시스템등 관련시설 장비등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 및 운영비 159.5억이 필요함.
- 나. 재정사업으로 방범CCTV를 구축할 경우 2012년 CCTV설치 예산(3.3억원) 기준으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며 민자사업대비 약3.5억원의 손실발생하고, 이는 급격한 기술 변화 속에 연차별로 구축되는 CCTV간 기술격차로 인한 호환성과 유지보수의 비효율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CCTV구축 관련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일시에 방범CCTV를 설치하여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함.
- 다. 시 재정여건상 일시적으로 투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임대형 민자투자방식 (BTL)을 통한 사업을 추진하여, 초기 투자비용의 부담 최소화와 민간건설·운영의 통합관리시스템의 적용으로 운영의 효율화를 기함으로써 공공서비스 질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4조, 제6조, 제8조의2, 제10조, 제23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4조, 제6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유비쿼터스도시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지방자치법 제39조
- 안산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4조

관련사업계획서 : 불임

예산수반사항

- 사업비 159.5억원(불변가)
※ 세부내역 참고자료 1 참조

기타 참고사항

- 안전안산 안심안산 U-City 2단계 사업계획 1부
- 안산시 U-City 운영현황 1부

안전안산 안심안산 U-CITY 구축 2단계 민자사업(BTL) 추진 동의(안)

안전안산 안심안산 U-CITY 2단계구축 민자사업(BTL)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민간투자 대상사업 지정 및 정부고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지방자치법」 제39조제
1항제8호 규정에 의거 의결한다.

1. 사업명 : 안전안산 안심안산 U-CITY 구축 2단계 민자사업(BTL)

2. 사업내용

- 안전안산 안심안산 U-City 광대역 정보통신망 관리시스템 1식
- 안전안산 안심안산 U-City 광대역 정보통신망 보안시스템 1식
- 안전안산 안심안산 U-City 광대역 정보통신망(자가통신망) 구축 1식
- 청소년 등·하굣길 및 골목길 방범CCTV 확대 설치 : 395대

3. 서비스내역

- U-City 관리(T-NMS, NMS, 광감시, 서버감시)시스템
- U-City 보안서비스(침입차단, 정보통신망 접속관리등)
- U-City 도시안전서비스
 - 청소년 안전한 등·하굣길 방범용 감시시스템 설치
 - 취약지역 및 사각지역에 방범용 감시시스템 설치

4. 사업비 : 159.5억원(고시일기준 불변가)

- 사업비 : 108.5억원
- 운영비 : 51억원

5. 운영설정기간 : 8년(공사 준공후 8년)

소 관 실 · 과		U - 정 보 센 터
입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U-정보센터소장 임 흥 선
	담당 직위·성명	U - C i t y 계 이 승 원
	담당자 성명·전화	김 영 준 (☎ 481-2822)

참고1)

안전안산 안심안산 U-City 2단계 사업(BTL) 계획

□ 사업개요

- 사업명 : 안전안산 안심안산 U-City 2단계 구축 임대형민자사업
(BTL : Build – Transfer – Lease)
- 위치 : 안산시 전역
- 사업내역
 - U-City 관리시스템 구축 1식
; 통합관제센터장비, 자가통신망, 현장센서(CCTV, 환경 센서등)등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 U-City 보안시스템 구축 1식
; 내·외부로터의 공격(해킹, DDOS, 웜바이러스등)의 공격을 차단하여 시스템 보호
 - 첨단 안산 U-City 자가통신망 구축 1식
 - 청소년 등·하굣길 및 골목길 방범CCTV 확대 설치 : 395대
; 기존 41만화소에서 130만화소로 상향 설치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준공 후 8년간

□ 사업비 : 159.5억 원(불변가)

- 총사업비 : 108.5억 원
- 운영비 : 51억 원

□ 사업비 산출내역

○ 사업비 산출내역

가. KDI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사업비를 산정함.

나. KDI 제시한 사업비 산출 주요내용

- 공사비 설정시 제비율은 2011년 9월의 최신의 제비율 적용
- KDI 타당성 검토시 공사비중 증축비 및 S/W 비용 제외 타당성 검토하였으며 주무관청에 검토하여 S/W비용 포함 재산정.
- 투자유치심의위원회(2012년 2월 16일) 증축비 삽감 : 설계가 488백만원 삽감
- 일반감리 + 건설사업관리(CM)에서 전면 책임감리 적용
- 주무관청에서 설정한 낙찰율(PSC 87.12%, PFI 78.58%)을 KDI 가이드라인에서 설정한 정보통신망 평균낙찰률 PSC 84.19%를 적용

다. 안산시 투자심의위원회

- 안산시 투자유치 조례 제4조 관련임
- 투자유치심의위원회 개최일 : 2012년 2월 16일 16:00
- 사업 중 통합관제센터 증축비 삽감 및 기 건축물 최대한 재활용 제시

라. 공사비변경

(단위 : 백만원)

KDI제시안	투자심의위원회 제시(안)	투자심의위원회 적용(안)	비고
10,310,107	11,215,286	10,727,186	

-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검토보고서 권고안(10,310백만원)에 아래 ①, ②를 반영하여 재산정 함.

① S/W비용 증복 확인요청 및 검토 후 아닐 경우 재반영 요청

→ 제출안 493백만원/KDI검토안 369백만원을 순공사원가에 반영 함

② 증축공사비 재반영 검토하여 공사비 반영

→ 제출안 488백만원을 공급가액으로 반영

- 안산시 투자유치심의위원회 증축공사비 삽감하여 공사비 재산정 함.
→ 증축공사비 설계가 기준 488백만원 삽감

마. 공사비 낙찰가 산출

- PSC 공사비의 경우 설계공사비의 적용률은 약 84.19% 수준임
- PFI 공사비의 경우 설계공사비의 적용률은 약 75.94% 수준임

구 분	PSC 공사비	PFI 공사비
공사비	10,727백만원	10,727백만원
공사비 적용금액 (84.19% 적용)	9,031백만원 (84.19% 적용)	8,146백만원 (75.94% 적용)

주 : PSC, K D I 검토안 수용

PFI : 준거사업(1단계사업) 기준공사비 단위단가 낙찰률 90.2% 반영
(사업제안 기준공사비는 PSC공사비 적용)

마. 감리비 산출관련

- 일반감리 + 건설사업관리(CM)에서 전면 책임감리 적용
- 공사내역별(정보통신/건축)에 대한 전면 책임감리비 산출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지식경제부공고 제2011-77호]/ 건설부문의 실시설계 요율 적용

(단위 : 백만원)

구 分	PSC 감리비	PFI 감리비	비 고
통신부문 (U-CITY)	865	865	
건설부문 (센터증축)	0	0	
합 계	865	865	

※ 증축 공사비 삽감으로 건설부분 감리비 삽감함.

바. 임대형민자사업(BTL) 적격성 조사표

(단위: 백만원)

항 목	PSC		PFI		비고
	불변가	경상가	불변가	경상가	
시설투자비(A)(=11+12)			13,585	10,505	
1 조사비					
2 설계비	518	535	469	485	
3 공사비	9,031	9,361	8,146	8,444	
4 용지및지장물보상비					
5 부대비	904	937	1,126	1,167	
타당성조사비					
교통영향평가비					
환경영향평가비					
감리비	865	897	865	897	
각종보험료	29	30	32	33	
금융부대비용			169	175	
기타	10	10	60	62	
6 운영설비비	391	404	353	365	
7 영업준비금			44	45	
8 총사업비(Σ 1-7)	10,844		10,137		
9 물가변동비	394		368		
10 건설이자					
11 총투자비(=8+9+10)	11,238	11,238	10,505	10,505	
12 금융비용	2,347	2,347			
운영비(B)	5,104	6,211	4,756	5,788	
시설행임대료(C)				13.144	
부속사업순이익(D)					
현금지출 총액					
A+B-D/ B+C-D		19,796		18,932	
현재가치합계		14,046		13,700	
VFM				346	있음

- 현재 VFM값은 346백만원으로 VFM>0이상이면 민자투자사업 적격성이 있음.
 - 민자사업추진시 예측된 총현금지출액은 189.3억원(경상가)③이며 PSC사업 총사업비①, 운영비②의 합산가격인 약159.5억원(불변가)는 민자사업고시 가격으로 민간투자사업자는 고시가격 이하로 사업제안서 제시해야 함.
- * 경상가격은 불변가에 물가지수를 더한 가격으로 건설기간에는 건설물가지수 (GDP 디플레이터) 미반영, 운영기간에는 소비자물가지수를 더한 가격임.

□ CCTV 설치 계획

○ CCTV 설치 민원 및 반영 현황

(2009. 9.1. ~ 2011.5.20. 현재)

구분	합계	유관부서 및 기관 요청					민 원					비고
		소계	설파 소동	상록 경찰서	단원 경찰서	초중 고교	소계	새울 민원	전화	방문	기타	
요청	948	641	492	112	36	1	307	109	182	8	8	
반영	395	321	213	107		1		74				

○ CCTV 서비스(목적)별 설치 계획

합계	방 범 용							일반 관리			
	소계	골목길 방범	농작물 보호	유아 시설	초등 학교	중·고 교	어린이 공원주변	소계	공원 관리	문화재 보호	시설물 관리
395	361	287	11	13	32	15	3	34	27	1	6

○ CCTV 설치 지역 선정 기준 및 추진 방향

- 가. 초·중학교 주변 및 통학로 중 누락지역을 우선 설치하여 어린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도록 조치
- 나. 단독주택지역의 골목길 중 기 설치된 CCTV와의 거리 등을 감안 중복되지 않도록 하되 범죄발생지역과 위험지역을 선별 설치
- 다. 실시설계 기간 중 구체적인 장소에 대한 공청회(심의회)를 개최하여 최적의 위치 재선정(실시설계 공청회 개최)
- 라. 기타 행정안전부 지침 준수

붙임1)

시설사업 기본계획(RFP)

○ 민간투자사업의 범위

가. 설계 및 시공

나. 공사감리(주무관청이 감리전문업체를 선정하고 감리용역비는 사업시행자가 지급)

다. 각종 신고 및 인허가 업무

라. 시설의 양도

마. 운영기간중의 유지관리 등

○ 사업에 필요한 비용(고시가)

가. 총사업비: 108.5억원(고시일 기준 불변가격기준, 부가가치세 제외)

· 본 총사업비는 기부채납당시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하여 산출된 사업비이며, 사업신청자는 사업계획서 작성 시 현재 적용되고 있는 기부채납당시 영의 세율을 적용하여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정부지급금 평가를 수행하고, 추후 사업시행자와 협약에서는 본 사업계획서 내용을 기초로 협상을 통해 최종 확정된 사업비에 준공 시(기부채납 시) 부과되는 세율의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총사업비 및 총민간투자비를 결정한다.

※ 건설사업관리비 865,000천원은 총사업비에 포함하여 제안해야 한다.

※ 총사업비에 계상한 건설사업관리비와 건설사업관리비 계약금액 간에 발생한 차액은 총사업비에서 조정한다.

나. 운영비 : 51.0억원(부가가치세 제외, 불변가격, 관리운영권설정기간 운영비)

○ 사업시행의 조건

가. 사업추진방식 : BTL(Build – Transfer – Lease)

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8년

다. 사업비 설정

· 사업신청자는 총사업비 상한액을 초과하여 제안할 수 없음(건설이자와 물가변동 제외)

· 사업수익률은 사업신청자가 제시하되 실시협약을 통해 최종 확정토록 함

- 운영비는 사업신청자가 자율 제시하되 그 근거를 제시하고 실시협약에서 확정된 금액(불변가격)에 물가 변동비를 반영하여 지급함

라. 운영 및 유지관리

- 사업시행자는 본 시설물이 준공당시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를 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 목적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함.
- 운영에 있어서 민간의 창의 및 효율 제고를 위한 페널티 및 인센티브 제도 도입

○ 사업신청자의 구성·자격·제한 사항

가. 사업신청방법 및 사업신청자 구성

- 사업신청자는 정보통신시설건설·운영의 경험·실적을 보유한 정보통신법인, 정보통신시설운영법인, 재무적 투자자 등으로 구성 하여야 하며, 사업신청시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의 대표자(대표법인) 명의로 신청하여야 함
- 시공사, 운영사, 금융기관 등은 출자 이외의 방법으로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

나. 출자자의 자격

- 각 출자자별 과거 5년간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기업회계기준)을 기준으로 산정된 연평균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이 출자자별 자본금 투입예정금액 이상이어야 함. 단, 출자자별 투입예정금액은,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고시된 총사업비를 기초로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물가변동율을 반영하여 계산되는 추정사업비(준공기준)을 기준으로 산정

가) 과거 5년간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실적이 없는 경우 실적이 있는 기간 동안의 연평균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을 기준으로 함.

나) 단, 개인, 외부감사를 받지 아니한 기업 또는 위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출자자의 경우 제3자(타 출자자 등)의 출자보증서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출자자의 조달금액 이상의 대출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금융기관이란 민간투자법 제2조16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각목에 해당하거나, 민간투자법 제41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소위 인프라 펀드), 기금관리기본법 별표2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금설치 근거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 군인공제회법에 따른 군인공제회, 대한교직원회법에 따른 한국교직원공제회 및 이에 준하는 연기금 등을 의미하며, 금융기관(민간투자법 제41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포함), 연기금이 출자자가 되는 경우 재무능력에 대한 사전자격심사(PQ)는 생략함.
- 설립예정인 공모인프라펀드의 경우 증권회사의 총액인수화약서로 대신할 수 있음.
- 금융기관이 발행한 출자자의 조달금액이상의 대출확약서 제출도 가능함(설립된 인프라펀드 포함).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29조 제3호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음)로서, 약관 또는 정관에 사회기반시설사업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거나 집합투자재산의 90% 이상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투자로 운용하기로 정한 집합투자기구는 재무적투자자로 분류하고 다음과 같이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평가한다.
 - ① 집합투자기구가 설립된 경우, 투자신탁은 법인 명의 출자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투자신탁은 수탁기관 또는 자산운용회사 명의의 출자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예시:△△투자신탁, ○○은행(수탁기관) 또는 ××운용(운용기관) 단, 자산운용회사 명의로 제출한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후 10일 이내 수탁회사 명의로 출자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집합투자기구가 설립예정인 경우, 사모집합투자기구는 투자예정자들의 투자의향서(또는 수익증권 매입의향서) 및 투자대상사업에 대한 공동출자화약서를 제출하며, 공모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의한 증권회사의 총액인수화약서 및 설립/설정 실패 시에 투자대상사업에 대한 직접출자화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집합투자기구가 설립예정인 경우, 설립예정인 집합투자기구의 출자자 평가방법은 일반출자자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 ④ 평가를 위하여 출자자로서 제출해야 할 양식 중 <양식 10>~<양식11> 등의 제출을 면제하고 <양식 12> 재무능력평가표는 별도의 양식을 추가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투자신탁은 수익증권매입확약서, 투자회사는 출자 확약서 첨부하여야 한다.

- ⑤ 평가방법은 $(가입약정액 - 기실행금액) \geq (\text{출자예정금액} \times 120\%)$ 인 경우 재무 능력에 대한 PQ를 통과한 것으로 함. 단, Capital Call 방식인 경우 투자자의 출자약정서 및 매입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납입액에 대하여서는 100% 인정한다.

- 시공법인의 경우 “조달청 입찰자격 사전심사 세부요령”상의 적격자 선정요건에 부합하면 재무능력에 대한 PQ를 생략할 수 있다.

- ① “조달청 입찰자격 사전심사 세부요령” 상의 적격자 선정요건에 부합하여 재무능력에 대한 PQ가 생략되는 시공출자법인의 출자보증서는 인정되지 않음

- 출자자는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기업회계기준) 제출시의 출자자별 자본금 투입예정금액의 비율산출은 상법상 규정된 기업회계 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다. 시공사(시공법인)의 자격

- (1) 시공자는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①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
- ②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시스템통합) 신고를 필한 업체
- ③ 2010년 말 기준 최근3년 공사실적 누적 금액이 총사업비의 100% 이상인 업체(2010. 12. 31.기준)

- o 실적인정범위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준공된 단일건으로 밸류금액이 5억원(VAT포함) 이상으로 [별표1]에 해당하는 실적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수행실적에 각각의 공동도급비율을 곱한 후 합산 평가한다.

$$\text{〈예〉 실적평가점수} = (\text{A사 실적점수} * \text{A사 지분율}) + (\text{B사 실적점수} * \text{B사 지분율}) + (\text{C사 실적점수} * \text{C사지분율})$$

- 실적합계액은 유지보수대가 또는 단순물품 납품대가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수행실적은 실적증명서 원본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 한다.

- 심사대상자가 입증책임을 다하지 아니하여 이행실적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 국내업체가 외국에서 수행한 이행실적으로서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공증하거나 현지 상공회의소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고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생략할 수 있음. 실적증명서 및 관련 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는 한국어번역 및 공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이행실적 등의 외화표시 금액은 원화로 환산하여 적용하며, 적용환율은 입찰공고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매매기준율)로 적용한다. 단, 외화와 원화가 동시 표시된 경우는 원화를 적용한다.
- 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또한 사업 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병·분할·사업 양수도와 관련한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분할 및 사업양수도의 경우 실적 이행을 위하여 분할 및 사업양수도시에 권리 이외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별표1] 해당분야 및 가중치 적용 기준

구 분	내 용	가중치
동일실적	도시전체 또는 일정지역을 대상으로 한 USP 또는 기본계획수립, U-City(Smart City) 설계 및 구축 사업	100%
유사실적	교통(ITS), 시설물관리(상수도, 미디어보드), 환경·기상, 재해예방, 방범서비스, UIS/GIS, 행정정보서비스(G4C 등) 등 도시정보화 관련 사업으로 소프트웨어개발 용역 또는 설계 및 해당 시설물 공사(구축)를 말한다.	50%

※ 공동주택 또는 건축물 및 그 부지내 설치한 정보통신망, 방범 등 정보통신 공사와 물품/장비의 단순 납품 실적은 제외

- (2) 사업신청자는 위의 조건을 부합하는 시공법인(시공자)의 참여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3) 고시된 1단계 PQ심사 접수마감일 현재 업무중지 중인 업체는 응모 불가함
- (4) PQ 평가 후 시공법인(시공자)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업신청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라. 운영사(운영법인)의 자격

- (1) 운영자는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①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
 - ②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시스템통합) 신고를 필한 업체
- (2) 사업신청자는 위의 조건을 부합하는 운영법인(운영자)의 참여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3) 고시된 1단계 PQ심사 접수마감일 현재 업무중지 중인 업체는 응모 불가함
- (4) PQ 평가 후 운영법인(운영사)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동일수준 이상의 운영사로 변경하여야 하며, 사업신청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함
 - ① 운영사가 제공하게 될 시설유지보수서비스에 대해 주무관청과 민간사업자간의 실시협약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 1】 성과요구수준서”의 “4. 운영 및 유지관리 단계의 요구수준”을 참조할 것

마. 제한 사항

1) 출자자 지분율

- (1) 사업신청자가 5인 이상의 출자자로 구성되는 경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을 원칙적으로 25% 이상이어야 한다.
- (2)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후 출자자를 변경하려고 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승인하지 않는다.
 - ① 출자자 변경으로 인하여 출자자의 재무상태 또는 신용도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② 출자자 변경 이후 완공 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③ 기타 출자자 변경이 사회의 공익적 목적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
- (3) 사업시행자 지정 이전에 출자자 지분율이나 출자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함. 단, PQ의 출자자 자격요건의 변동이 없어야 한다.
- (4) 주무관청은 승인여부와 내용을 별도의 통보가 없는 한 3개월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2) 자기자본비율

(1) 최소 자기자본비율은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이어야 한다.

① PQ평가를 위하여 출자자별 자본금 투입예정금액은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고시된 총사업비를 기초로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계산되는 추정사업비(준공기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사업신청자는 직접투자분에 대하여는 출자자의 투자확약서를 제출하되, 출자자가 재무적투자자(금융기관, 연기금 등)인 경우 조건부 투자확약서의 제출이 가능하며, 이 경우 실시협약체결 시까지 조건없는 투자확약서로 변경 제출하여야 한다.

3) 타인자본

- (1) 차입분에 대하여는 차입 예정금액에 대한 금융기관 등의 대출의향서나 조건부 대출확약서를 PQ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시까지 자금차입계약서(대출약정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2) 동일사업에 대한 금융기관 등의 대출의향서는 3개 사업신청자 이내로 허용한다. (단, 금융기관 등이 출자사로 참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동 사업신청자로 한정)

4) 복수참여금지

- (1) 사업참여자는 복수의 사업신청자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에 참여할 수 없음. 다만, 금융기관과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등은 사업신청자에 대해 대출의향서 및 보증의향서를 복수로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2) 기 설립펀드의 경우 펀드에의 투자자와 당해 펀드는 동일 사업에서 복수의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에 참여할 수 있다.
- (3) 설립예정펀드의 경우 예정펀드에의 투자예정자는 당해 설립예정펀드가 동일 사업에서 복수의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에 참여할 수 없다.

5) 사업신청자의 신용평가등급

- (1) 사업신청자(출자자, 시공사, 운영사)는 아래 신용평가등급 이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회사체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 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B+, B0, B-	B	B+, B0, B

- (2) 고시일로 부터 2년 이내에 부정당업체로 지정된 자는 본 사업에 참여 할 수 없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 (3) 단독 용찰의 경우 「8.3 협상대상자 지정 및 협상」 의 기준에 의하여 우선 협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4) 외국인에 대한 투자 지분율의 제한은 없으며, 제도운영에 있어서 내·외국인 간에 차별은 없다.
- (5) 본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주무관청이 제공하는 각종 불임서류의 내용에 있어 단순착오 및 경미한 사항(오기 등 각종 일정, 수식의 오류)에 대하여는 지정된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통해 변경 및 수정이 가능하다.
- (6) 주무관청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실시협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민간투자법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4) 사업자의 평가

가. 1단계(사전자격심사(PQ))

- “사업참여자의 자격”의 충족여부 평가
- “제한사항”의 위반여부 평가
- 〈별첨1의 「사업신청서류 작성 지침」에 따른 서약서 제출 여부
- 1단계 평가를 위해 요구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하였으나 평가를 위해 요구되는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흠결이 있는 경우, 서류에 대한 수정 또는 보완은 인정되지 않음. 다만, 주무관청은 제출 서류의 내용이 불분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음.
- 1단계(PQ)평가 요소” 중 한 항목이라도 충족시키지 못하면 결격자로 처리함.

나. 2단계(기술·가격평가)

- 1단계(PQ)를 통과한 사업신청자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서 성과요구수준서의 만족 여부와 제안된 총사업비의 고시된 총사업비 초과 여부 평가함.

- 성과요구수준서를 만족하고 제안 총사업비가 고시된 총사업비 이하로 제안된 사업신청자를 대상으로 배점함.
- 기술능력 및 재무(정부지급금, 출자자 구성)요소 평가
 - ① 기술·재무 요소 평가배점 비중은 원칙적으로 7:3로 하되 건설·운영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조정함
 - ② 제안된 공사비, 운영비용이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설계·시공·운영 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인지도 함께 검토하여 평가할 예정임

다. 심사 및 평가 간 사업신청서류 작성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사업신청자의 부담으로 함.

참고2)

안산시 U-City 운영 현황

1. 점단 안산 U-City 광대역 정보통신망 구축 1차 민자사업 추진현황

1) 사업개요

- 공사기간 : 2009. 9. 22~2010. 3. 21(181일)

- 구축내용

- 통합관제센터 구축: 396m²(120평)
- CCTV설치: 816대(신규 563, 기존통합 81, 연동화 172)
- 유선통신망 구축: 229.67km(지중 84.26, 가공 145.41) 등

- 총사업비 : 15,344백만원(국비 500, 도비 1,618, 민간투자비 13,226)

- 사업방식 : 임대형 민자사업(BTL), 운영기간 10년

2) 사업여건

- 건축현황

- 위치 : 안산시 상록구 사동 1586-3(항가울길 200)
- 대지 면적 : 7,976.9m²
- 지역, 지구 :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 건축 면적 : 2,031m²
- 연 면 적 : 3,068m²(U-City 통합관제센터 396m²)
- 지상총면적 : 3,068m²
- 건축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주요시설내역 : 통합관제상황실, ITS상황실, 정보통신실 등

- 운영인원

계	경찰	관리요원	모니터요원	운영요원	비 고
42	3	2	32	5	4조 1일 2교대 근무

※ 관리인원 및 운영인원은 안산시 도시공사 직원

- 관제서비스 : 11개서비스(방범, 자전거도난방지, 쓰레기무단투기 감시, 보육 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보호, 산불감시, 문화재공원, 공공 시설물, 차량번호인식 등)

○ CCTV 서비스별 운영현황

서비스 종류	주요설치 장소	CCTV 설치내역						비고
		계	재정 (10-11)	신길 택지	U-City 1단계	기운영 CCTV	연동화	
합 계		888	46	13	563	81	185	
방법용 소계		620	46	5	494	75		
방 법 용	주택가, 골목, 약수터 등	338	10	5	251	72		
차량번호인식	사군 경계구간 진출입로	75	18		54	3		
자전거도난방지	전철역, 도시중심가 주변	14	1		13			
어린이 보호	보육시설	시립 어린이집 주변	16			16		
	초등학교	초등학교 등 학교 주변	44	1		43		
	어린이 공원	주택가 소규모 어린이 공원	133	16		117		
교통정보, 주정차단속	버스정류장, 주요간선도로	186					171	
일반관리 소계		97		8	69	6	14	
공원관리	호수공원, 화랑유원지 등	15			13		2	
문화재보호	도, 시 지정문화재 관리	11			11			
시설물관리	어촌마을, 등대전망대, 공원묘지 등	28		8	16	4		
쓰레기투기감시	주택가 나대지	24			24			
산불감시	산불 취약지 산 정상	7			5	2		
재난관리(하천)	반월, 안산, 화정천 재난감시	3					3	
환경오염감시	공단 악취 및 매연 감시	9					9	

3. 운영성과

○ 운영 실적

[2010. 4.13. ~ 2011.12.31]

총 계	검 거	훈 방	경찰출동	경고방송	기 타
4,175	267	127	646	203	2,932

※ 기타 : 환자 소방차 이송, 취객등 귀가조치, 습득물 수거, 쓰레기무단투기 등

○ 「안산 U-City 통합관제실」 운영 전·후 비교 자료

[기준일자 : 2010. 4.13. 전후 1년간 / 전]

구 분	범죄발생건수			강력사건 발생건수			비 고
	전	후	증감(%)	전	후	증감(%)	
『안산 U-City 통합관제실』 운영	22,201	18,532	△16.5	4,500	4,229	△6.0	

4. U-City 1단계 사업 서비스 만족도 조사

○ 시민 만족도 설문조사

- 안산시 시민으로 전철역(상록수역, 중앙역, 안산역) 및 관내 주민센터 이용자 대상으로 현장 설문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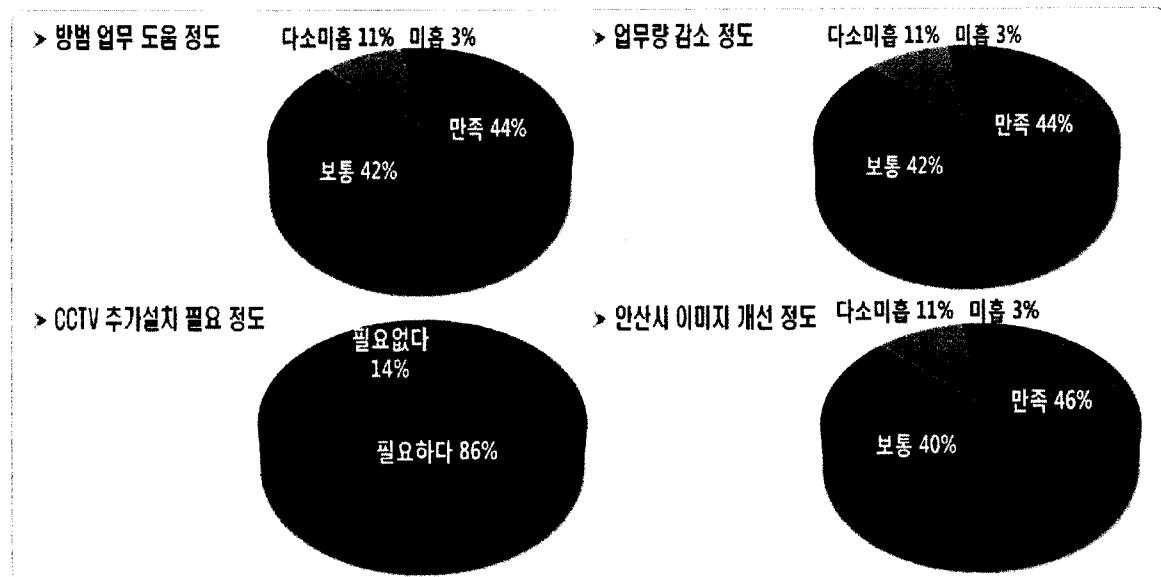


※ 만족도 조사 결과 분석

- 응답자의 53%가 안산시에서 CCTV 관제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비스의 효과도 85%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함
- 서비스의 경험도 시민 10명 중 1명 이상이 경험하였으며, 필요한 서비스로는 방범·교통·어린이보호 순으로 높게 조사됨
- CCTV 추가 설치 요구는 약 90%로 응답자 10명 중 9명이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나타냄

○ 경찰공무원/방범대원 만족도 설문조사

- 경찰공무원(상록경찰서, 단원경찰서) 및 각 주민센터 지구방범대원을 대상으로 설문 실시(559명)



※ 만족도 조사 결과 분석

- 응답자 중 86% 이상이 보통 이상으로 만족한다고 대답하였으며, 업무량 감소 정도에 대해서도 86%가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됨
- CCTV 추가설치에 대해서도 86%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나, 화질문제 등으로 고성능에 대한 요구가 높았음
- CCTV 관제서비스로 인한 안산시 이미지 개선 정도는 86%가 보통 이상으로 만족하고는 있으나 추가설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함.